

# 형사소송법(9급)

(과목코드 : 133)

2024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소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보증금납입 후라야 석방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상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ㄱ. 구속의 집행정지
- ㄴ. 구속의 취소
- ㄷ.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 ㄹ.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3.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할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ㄴ.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 ㄷ.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에 대한 이유부기피신청의 경우,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ㄹ.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은 전원일치로 하되,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4. 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병합관할한다.
-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5.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ㄴ.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ㄷ.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 ㄹ.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6.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ㄱ.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 )년이다.
- 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 ㄷ.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ㄹ.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① 26                          ② 29  
③ 30                          ④ 32

7.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③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8.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몰수·추징과 같은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 ③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④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 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유죄부분도 함께 하나의 주문을 선고해야 하므로 사안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9. 형사재판에 대한 관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 조사 완료 전까지 앞서의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 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 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ㄷ.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 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ㄹ.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① ㄱ, ㄴ                      ②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0.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관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의 자백만이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물론 범인의 내적인 상태도 이에 준하여 자백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11.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관례에 의함)

- 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②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인 경우라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12. 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담임 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한 경우
- ㄴ.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 ㄷ.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ㄹ.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①  $\neg, \supset$                       ②  $\neg, \neg, \supset$   
③  $\neg, \supset, \supset$                   ④  $\neg, \supset, \supset$

13. 비상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상고나 비약적 상고와 구별되며 재심과 공통된다.
- ②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③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와 원판결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 ④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14.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상실된 피의자진술 조서에 문자전송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진술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녹화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탄핵증거에 관한 의견진술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6.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 대하여는 감정이 아닌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 따른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 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19.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한 때
- 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ㄷ. 69세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ㄹ.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17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①  $\neg, \neg$                       ②  $\neg, \neg, \neg$   
③  $\neg, \neg, \neg$                   ④  $\neg, \neg, \neg, \neg$

20. <보기-1>의 사례에 관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기-1>

2024. 2. 15. 군검찰관 X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병장 甲을 약식기소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수사 단계에서 상병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상병 乙을 약식기소하였다. 재판을 담당한 군사법원도 그대로 상병 乙에게 약식 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이를 받은 상병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졌다.

<보기-2>

- ㄱ.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군검찰관 X는 피고인표시를 상병 乙에서 병장 甲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 ㄴ. 군검찰관 X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군사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표시를 상병 乙에서 병장 甲으로 경정한 후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 甲에게 송달하면 이 때부터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
- ㄷ. 군사법원은 피모용자인 상병 乙에 대해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주어야 한다.
- ㄹ.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를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원이 정식재판절차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ㄱ, ㄷ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체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피의자의 변호인도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는 없다.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신문방법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2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인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빈곤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더라도 변론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공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이 작성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가 위법무효이지만, 나중에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②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특수 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기에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된다.

24.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의 사유가 있거나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②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③ 항소법원이 원심(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항소에 대한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이든 항소법원의 항소기각결정이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5.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의 공범 3명 가운데 1명에 대한 고소는 다른 2명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1명에 대한 고소취소가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를 검사에게 한 자가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경우,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고소취소후 재고소금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④ 피해자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검사가 공갈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공갈죄에 대한 실체판결이 아니라 협박죄의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